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33호 2018. 8. 24.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0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650호 삼척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시설) 결정(변경) 열람 공고 ----- 5
- 삼척시 공고 제661호 삼척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6
- 삼척시 공고 제666호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8
- 삼척시 공고 제667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35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18 - 102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08. 24.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5길 138-17 외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8. 2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1529-1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5길 138-17	20180824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행정구역명사용(옥원이천로분기)	
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885-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1길 76-41	20180824	건물신축	20090626	일련번호방식사용(임원안길분기)	
3		이	하	여	백		
4							
5							
6							
7							
8							
9							
10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주소	계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리 1529-1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이천5길 138-17	20180824	건물신축	20090626	도로명 부여사유	
	2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885-1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1길 76-41	20180824	건물신축	20090626	도로명 부여사유	일련번호방식행정구역명사용(옥원이천로분기) 일련번호방식사용(임원안길분기)

삼척시 공고 제2018-650호

삼척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시설)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삼척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삼척시장

1. 열람목적

- 삼척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2. 열람기간 : 2018. 8. 24. ~ 2018. 9. 10.(17일간)

3. 열람장소 : 삼척시청 도시과

4. 열람개요

- 가. 도계 심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삼척유리조형 문화·관광 테마파크 측량 결과 및 현황 반영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 미로면사무소 주 진입로(소로) 확장 계획 및 노선 분리
 - 정상동, 교동 제2종일반주거지역내에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소로 신설 3개소
- 다.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 장호, 용화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배수지 신설 1개소

5. 관련도서 및 조서 : “실용생략” (열람장소 비치)

6. 의견제출 장소 및 방법

- 가. 제출기한 : 열람기간 내
- 나. 제출장소 : 삼척시청 도시과
- 다. 제출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서에 의한 서면 제출

7. 기타 사항

- 열람(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관련부서(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등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과(☎033-570-38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공고 제2018-661호

「삼척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2일

삼척시장

**삼척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자원조성법)』 개정 (조항신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임사항이 있어 삼척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의(안 제2조)
- 나. 가로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3조)
- 다. 가로수 조성협의(안 제6조)
- 라. 가로수 식재기준(안 제9조)
- 마.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및 비용부담(안 제17조)
- 바.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지역(안 제22조)
- 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24조)
- 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안 제25조)
- 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위원회의 운영(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삼척시장(참조: 공원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개정안	수정의견서		비고
	수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단·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E-mail : pwk81@korea.kr

- 주소 : (우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공원녹지과

- 전화 : 033 - 570 - 4016

- 팩스 : 033 - 570 - 318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 공원녹지과(☎ 033-570-40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전부개정조례안은 삼척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삼척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삼척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樹木)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나.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다.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
2.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시민의 보건·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 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 구역은 제외한다.
3. “녹지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서 정하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를 제외하고 도로변에 가로경관 향상과 녹지 제공 등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4. “중앙분리대”란 차도를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해 왕복차도 사이에 설치하는 분리대로 차도를 따라서 중앙에 만들어져 있는 녹지공간을 말한다.
5. “수벽(樹壁)”이란 보·차도 경계석으로 구분된 보행자 공간 쪽에 설치한 공간에 잔디나 나무 등 조경 수목을 심은 것을 말한다.

- 6. “바뀌 심기”란 경관을 해치거나 도로교통 안전에 장애를 주는 경우, 보행자나 지역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병충해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정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절한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 7. “메워 심기”란 같은 간격으로 심겨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가로수를 심는 것을 말한다.
- 8. “가로수 지주대”란 가로수를 날씨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 “지주대”라 한다)을 말한다.
- 9.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 10.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건널목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 11. “수고(樹高)”란 지표면에서 수관(樹冠: 나무의 줄기와 잎이 많이 달려 있는 줄기의 윗부분)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부에 돌출된 웃자람가지는 제외한다.
- 12. “수관고(樹冠高)”란 역지(力枝: 첫 번째 벌어진 가장 굵은 가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가지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 13. “지하고(枝下高)”란 지표면에서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가지까지의 수직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 14. “수관폭(樹冠幅)”이란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채택한다. 또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웃자람가지는 제외한다.
- 15. “부담금”이란 훼손된 가로수(녹지대, 중앙분리대, 수벽 등 포함) 및 관리 시설물 등의 복구에 드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제2장 가로수의 조성·관리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담당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 2. 가로수 현황 분석
-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 4. 가로수 양 및 질의 증진과 정비 방안
-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1. 지역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 2.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 3. 시민의 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 4. 환경오염 줄이기,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 5. 그 밖의 특정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수형이 정돈되어 있을 것
- 2. 발육이 양호 할 것
- 3. 가지와 잎이 정상적으로 발달하였을 것
- 4. 병해충의 피해가 없을 것
- 5. 이식 때 활착이 쉽도록 미리 이식하였거나 완전한 뿌리 끊기 및 뿌리 돌림을 실시하여 잔뿌리가 발달한 재배품일 것
- 6. 재배품이 아니면 수형, 가지와 잎 등이 표준 이상으로 우량하고 충분한 크기의 분을 떼서 이식할 수 있을 것

제5조(중앙분리대 수종 선정 기준) 중앙분리대 수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는다.

1. 식재수목의 지하고는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키가 큰 나무는 천근성(얇은 뿌리성) 및 비대성장의 특성이 강한 수종은 피하고 심근성 및 직립성장 특성이 있는 수종으로 하며, 키가 작은 나무는 꽃나무 등 수벽에 적합한 수종으로 선정하여 심는다.
3. 초화류(草花類: 꽃이 피는 종류의 풀)는, 꽃의 종류, 꽃이 피어있는 기간, 꽃의 키, 활착률을 고려한 자생화를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조성협의 등)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행정기관 또는 시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부터 시 가로수 담당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면 시 가로수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매설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 법령, 이 조례,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7조(식재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심는다.

1. 보도에 교목을 심을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의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에 접한 보도에 심을 경우 보·차도 경계선에서 가로수 수간의 중심까지의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단, 보도 넓이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

제8조(식재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9조(식재기준)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심어야 한다.

1. 교목(키 큰 나무)

- 가. 식재간격은 8m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성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 나. 식재유형은 도로 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을 맞추어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 보전 등 특정목적에 따라 군식·혼식할 수 있다.
-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심을 수 있다.
- 라. 도로의 같은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같은 수종으로 심는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같은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심을 수 있다.

2. 관목(키 작은 나무)

- 가. 식재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경관조성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식재할 수 있다.
- 나. 식재유형은 동일수종으로 군식하고,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

-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지피류(地被: 땅을 덮고 있는 잡초)를 다층구조로 심을 수 있다.
- 4. 지하의 인공구조물 때문에 가로수 심기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 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심을 수 있다.

제10조(도로표지판 등 설치) ①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에서 가로수와 상충이 될 수 있는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에 대한 요청이 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바로 가지치기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때문에 가로수의 기본 수형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가지치기) ① 가지치기 대상 및 기준은 산림청 고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 제9조에 준한다.

② 가지치기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병해충의 방제) ① 가로수 병해충 방제요령은 산림청 고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 제10조에 준하며, 주요해충 및 방제방법은 별표 1에 따라 한다.

② 병해충 방제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6조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제13조(지형과 토양보호) ① 시장은 가로수 식재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초성지는 절토·성토 등 지형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주변에 시각적으로 가려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물이 있거나 방음 수림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한 성토
- 2. 보행자, 운전자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절토·성토
- 3. 도로의 신설·개축·수선·유지보수공사 등을 위한 절토·성토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가로수 조성계획지 또는 기초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 조성계획지 및 기초성지의 토양이 오염되고 척박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토양개량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보관하였다가 곁흙으로 재사용하여야 하며, 곁흙의 깊이는 30cm 이상으로 한다.

⑤ 겨울철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 더미가 식수대(植樹帶: 가로수를 심으려고 길거리나 광장 따위에 마련한 터전)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점검) ① 시장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점검대상은 바뀌 심기를 필요로 하는 가로수, 병충해의 감염 여부, 고사목 메워 심기 또는 신규 식재수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

③ 정기점검은 5월과 11월에 실시한다.

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때 또는 식재·메워 심기·바꾸 심기 등 필요한 시기에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참여 등) ① 시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 1. 물주기
- 2. 병해충 발생신고
- 3. 가로수 주변 잡초 제거
- 4.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 5.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관리청에 신고
- 6.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여야 한다.

-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하는 행위
-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 ③ 주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가로수의 유지·관리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주민이 직접 가로수의 유지·관리에 참여하면 시장은 별표 4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식재와 관리의 시행) 시장은 가로수의 식재 또는 관리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산림조합법」 제46조와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에게 업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조성 등에 관한 승인 및 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 부서 외에서 시행할 때도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危害) 탓에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에는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원상복구 요구 또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훼손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 복구한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로수 훼손은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 상당금액을 2년 간 예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원인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업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삼척시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시장이 원인자에게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다만,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별표 2에 따라 시장이 산출한다.

- 제18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 ②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내지 않은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제19조(신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사람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가로수 조성·관리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에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 ②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5. 계획에 따른 복구 등
- 제20조(관리의 협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가로수의 관리는 관계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21조(관리대장) 시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하여야 하며, 가로수 관리대장은 전산화된 대상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3장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제22조(조성 및 관리지역) 법 제22조제4호에 따른 도시림(도시지역 내 산림 및 수목, 녹지) 조성·관리 지역은 읍·동지역으로 하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지역(공원구역은 제외)
2. 소공원 및 가로화단 등 녹지시설
3. 가로수 및 그 밖에 수목 식재지역

제23조(조성·관리계획의 시행) 시장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삼척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제24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20조의2에 따라 삼척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항 중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옮겨심기, 가로수 제거하기 및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3. 그 밖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위원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경제건설국장, 공원녹지과장
 2. 위촉직 위원(이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전문가
 - 나.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 다. 지역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③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제2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정·장소 및 주제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될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안전 의결방법 및 심의 결과 통보) ① 위원회에 상정된 안전의 의결방법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보류, 부결로 한다. 이 경우 보류된 안전은 보완하여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내용 등 심의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안전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본 업무의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가로수에 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기존 가로수 위원회 위원은 잔여 임기동안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 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별표 1]

가로수 주요충해 및 방제법

수병	가해수종	가해구분	방제법	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	벗나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이팝나무 단풍나무 등	있	○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 디프제 살포	○ 1회기 : 6월 상순 ○ 2회기 :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현사시 포플러류	가지	○ 피해가지 절단 소각 ○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	○ 5월 하순-6월 중순
재주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있	○ 피해가지 절단 소각 ○ 만코지 수화제 살포	○ 1회기 : 5월 초중순 ○ 2회기 : 9월 초중순
텐트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벗나무 느티나무	있	○ 알덩어리 채취 소각 ○ 디프제 살포	○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	버즘나무	있	○ 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 ○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	○ 수관살포 : 5월 하순 ~6월 초순 ○ 나무주사 : 6~7월
짚시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벗나무	있	○ 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 디프제 살포	○ 4월 중·하순
응애류	벗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	있 가지	○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	벗나무 버즘나무 이팝나무 소나무 등	있 가지	○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 발생초기(수시)
까지벌레류	벗나무 소나무 배롱나무 포플러류 등	있 가지	○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로프리트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 발생초기(수시)

[별표 2]

원인자 부담금

△ 피 해 발 생 의 경 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퍼센트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 이상 훼손 ○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10퍼센트 + 실작업비
△ 피 해 이 의 의 원 인 자 의 부 담 금 의 유 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 수 목 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보증금을 환불 	

[별표 3]

훼손자 신고인 보상금 지급기준

훼손자 부담금	보상금지급액	비고
10만 원 미만	20,000원	1) 교통사고로 경찰서에 신고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 2) 보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
10만 원 ~ 50만 원 미만	40,000원	
50만 원 이상 ~ 100만 원 미만	50,000원	
100만 원 이상	70,000원	

[별표 4]

가로수 유지·관리 주민참여 지원 기준

가로수 유지·관리	지원내용	비고
1. 비료주기	비료지원	
2. 병해충 발생신고	열매	
3. 생육피해 장애물 제거	〃	
4. 사고 또는 고의 피해나 피해우려가 있을 경우	장비 및 물품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	

[별지 제1호 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업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 근원직경 :	수량 본
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정()	
	납부기간			
<p>「삼척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인)</p> <p>삼척시장 귀하</p>				
<p>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사본 1부</p>				

※ 구비서류에 부담금 산출근거 첨부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가로수 관리대장(제21조 관련)

도로노선명					구 간	시 점					
						종 점					
도로종류	도로종류		도로폭	차 도							
	좌우측			좌측보도							
	연장거리			우측보도							
가로수 조성 현황											
최초조성					준공일자						
사업비					시공자						
수종	식재 본수 (본)	평균 수고 (m)	흉고 직경 (cm)	근원 직경 (cm)	수관 폭 (cm)	수령 (년)	식재 위치	식재 거리 (m)	식재 간격 (m)	식재 유형	보호틀 유형
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											
수종	일자	변동내용			관리내용						
		증감 수량	잔존 본수	증감 사유	계	가지 치기	방제	비료 주기	토양 개량	외과 수술	기타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시설종류	일자	잔존수량	설치수량	제거수량	기 타	비 고					

삼척시 공고 제2018-666호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8월 23일

삼척시장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 :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주차장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우리시 실정과 특징에 맞게 강화 및 완화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하는 등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토지이용체계에 따라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던 설치기준을 일원화하여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주차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차장 설치 시 바닥 마감에 대한 규정 신설 (안 제22조제3항)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규정사항 반영 (안 [별표5])

4. 입법예고 기간 : 2018. 8. 23. ~ 2018. 9. 13.

5. 의견제출

-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9월 13일까지 삼척시장(교통행정과장)에게 서면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33-570-3474, FAX : 033-570-3145)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교통행정과
- 전 화 : 033 - 570 - 3474
- 팩 스 : 033 - 570 - 3145
- E-mail : jyc8227@korea.kr

6. 참고사항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 부분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 의견서 서식 1부.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주차장 바닥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받아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경우와 행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및 관리지역 내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은 제외한다)은 포장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 등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를 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별표 5]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36조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탁시설	○시설면적 90㎡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30㎡당1대, 다만 종교시설, 의료시설, 예식장의 경우100㎡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40㎡당 1대, 다만 숙박시설의 경우 120㎡당 1대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초과 150㎡이하 1대 ○시설면적 150㎡초과:1대에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27조제1 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를 따른다. 이 경우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의 경우 전용면적이 60㎡이하는 세대당 1대, 85㎡이하는 세대당 1.5대, 85㎡를 초과하는 경우 전용면적 50㎡당 1대 이상으로 한다. 이 때 합산한 전체 주차대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5-1.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0.8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0.7대)이상으로 한다. 이 때 합산한 전체 주차대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터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00㎡당 1대
8. 창고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
9.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350㎡당 1대
1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250㎡당 1대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활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 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조례에서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설물 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1. 제15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강화기준은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 주차장치
 -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의견제출자 :

제정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